

신외부감사법 도입이 회계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최수열** · 김민희*** · 노희천****

〈요 약〉

2018년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목표를 둔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시행 이후 제도변경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무보고의 질을 측정하는 회계보수주의를 대용치로 활용하여 신외감법 도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13,121개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다 더 강화되었고 감사인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 영향이 크다. 둘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Big4와 nonBig4 감사인 집단에서 이전에 비해 보수적 회계처리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강화 현상에 있어 감사인 규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nonBig4 감사인도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측정하였다. 둘째, 제도변화의 효과를 감사품질의 변화가 아닌 경영자의 이익상향조정을 억제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변화로 측정하여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독립성을 견지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모형에 의해 측정된 보수주의 측정치는 모형이 완전하지 않고 통계학적 모형의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측정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에는 거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표현의 충실성에 배치되는 표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주제어〉 신외부감사법, 회계보수주의, 회계투명성, 회계신뢰성, 감사노력

*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의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sooychoi@samdoacc.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kminhee_@naver.com,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rhc0401@ssu.ac.kr, 교신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회계보수주의의 대응치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다¹⁾.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노력의 수준과 감사인 규모별로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조사하여 신외감법 도입이 감사인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회계투명성이 유지되려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고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견지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의 회계분식과 감사인의 감사실패 등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곽수근 외 2004 ; 김진수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과 관련된 보수주의를 대응치로 이용하였다.

주주,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에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회계정보의 질적속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었으나, 2011년 7월에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신뢰성을 제외하고 표현의 충실성을 포함시켰다. 비록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이 질적 속성에서 사라졌지만, 회계 실무에서는 신뢰성이 여전히 중요한 질적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신뢰성의 범주에 있는 보수주의 회계처리 회계관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를 측정하는 Khan and Watts(2009)의 C-Score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Basu (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모형으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보수주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지를 추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연도 13,121개 최종 표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 1은 예상대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인 강제교체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가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의 분석 결과는 연구 기본모형에서는 감사인 nonBig4가 감사인 Big4와 비교할 때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기본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값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신외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회계보수주의 강화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도별 C-score를 통제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 가설 2의 결과는 예상대로 신외감법 도입

1) 본 연구에서 신외감법 도입을 회계개혁 위한 선진화3법의 시행으로 정의한다.

이후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강화되었으나 감사인 규모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 현상에 있어 감사인 규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nonBig4 감사인도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3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보수주의 간 관련성의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대로 감사보수가 높거나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고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감사인의 노력에 따라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감사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측정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제도변경의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총 64개국 중 37위로 지난 2년 전과 비교하여 무려 24단계 상승한 것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³⁾. 둘째, 제도변화의 정책적 효과를 감사인 측면에서의 감사품질의 변화가 아닌 기업 경영자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수준의 변화를 조사한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다. 마지막으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 규모에 차이가 없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도변화 이전부터 이미 감사품질 수준이 좋은 Big4는 지속적으로 그 품질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고 제도변화 이후에 nonBig4도 감사품질 수준을 더 개선함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모형 설계는 제Ⅲ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는 제Ⅳ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 공헌점 및 한계점은 제Ⅴ장에서 제시한다.

- 2) 서울경제신문 기사(2021.6.21.)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올해 총 64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6위)보다 9계단 상승한 것이다. 지난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4단계이나 뛰어올랐다. 최근 2년간 회계 부문 경쟁력이 20단계 이상 오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 3) 조선일보 기사(2022.6.29.) : 2022년 6월 28일 IMD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투명성(Auditing and accounting practices) 평가에서 한국은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4개국 중 37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6계단 아래로 밀려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5년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과 우리은행 등 주요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 악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회계에서 보수주의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보수주의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관련된 순자산 및 순이익의 금액을 모든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이효익 외 2009).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서는 ‘2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SFAC No.2에서는 보수주의를 기업이 처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회계처리로 나타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보수적 회계처리를 신중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회계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정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중을 기하더라도 고의적인 자산 또는 수익의 과소평가, 부채 또는 비용의 과대평가는 재무제표의 중립성이 상실되어 신뢰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에 주의를 기할 것을 부연하고 있다.

회계 관습인 회계 보수주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봄에 있어 국내외 선행연구들 중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보수주의 관련 연구, 그리고 감사인의 대응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도변화와 회계보수주의 관련 연구

Lobo and Zhou(2006)은 Sarbanes-Oxley Act(이하 SOX) 도입 이후 기업들은 SOX 이전보다 낮은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SOX 이후 기업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빠르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강화가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외감법의 효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제도변화와 회계보수주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관일과 전성일(2005)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에서 IMF외환위기는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도입되며 회계 관련 법규가 크게 정비되었다. 이 연구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정도가 외환위기 전보다 이후 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박종찬(2005)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대한민국의 회계제도 개혁이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asu(1997)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기간을 전후로 구분하여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을 측정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이 모두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입한 회계제도 개혁이 보수적 회계처리 증가에 기여하며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우재(2021)는 지난 20년간의 추세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이 배제된 이후에도 기업들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경향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2019년으로 올수록 기업들의 회계보수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회계보수성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보수적 회계처리의 유용성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념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감시제도 및 환경의 강화가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기간에 보수적 회계처리 경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신중성과 신뢰성이 제외된 이후 기간에 오히려 보수적 회계처리 경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신국제감사기준 적용, 수익인식 기준의 개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표준감사시간의 제도 시행 등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러 제도가 시행된 2018-2019년 기간이 이전 2014-2017년 기간에 비해 회계보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감사인과 회계보수주의 관련 연구

감사인과 회계보수주의 관련 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DeFond and Zhang(2014)은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책정할 때 높은 재량적 발생액(High Discretionary Accruals), 낮은 회계보수주의(Low Accounting Conservatism), 낮은 신용등급(Poor Credit Ratings) 등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사인이 낮은 회계보수주의를 감사 위험 요소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보다 높은 감사 노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Francis and Wang(2008)은 Big4 감사인이 감사하는 기업일수록 비정상적 발생액(Signed Abnormal Accruals)이 더 작고,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Likelihood of Reporting Losses), 회계 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rancis and Yu(2010)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아테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그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계속감사기간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계 보수주의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부

터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감사인 강제 교체를 준수해야 하는 그리스에게 적절한 규제임을 시사 한다.

감사인과 회계보수주의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용식과 박상훈(2023)은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에 회계의 보수주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의 보수주의는 더욱 증가하였고 그 이유는 증가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더욱 향상시킨 결과로 해석하였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존재할 때 기존 감사인의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시행으로 새로운 지정 감사인과 기존 감사인 간의 감사의견 불일치 리스크는 높아질 것이다. 지정 감사인은 높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지정 직전 기존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2018년과 2019년의 재무제표는 그 이전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감사인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 중 동일 감사인과의 자유수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유수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기업에 비해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유수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존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사전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감사인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가능성을 감사위험으로 인식하여 사전적으로 감사위험을 낮추고자 하며, 이러한 감사인의 의도는 회계정보의 보수주의 수준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손혁과 정재경(2020)은 규모가 작은 감사인이 이해관계자의 소송위험과 감사인 명성의 제고로 인해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지정기업에 요구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규제 당국이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인의 규모를 선정기준에 포함하기 때문인 것에 착안하여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정기업의 보수주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측정하였고, 이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회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작은 감사인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소송위험과 감사인 명성의 제고로 인해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지정기업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순금 외(2015)는 감사인 지정이 기업의 보수주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인 미지정기업에 비해 감사인 지정기업은 보수주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위험에 대해 더욱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는 지정감사인이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견지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지정전기간과 지정후기간에 비해 지정기간의 보수주의 정도가 높은 것은 감사인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감사인이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해서 기업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을 수 있는 것은 독립성이 강화된 지정감사인의 위험회피 성향과 지정전기간에 잠재되어 있던 기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지정기간에는 자본시장과 규제기관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증가시키는 지정제도는 감사인이 더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게 하며 감사인의 이러한 행동변화는 지정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김석현 외(2013)는 내부통제의 질과 감사인의 규모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부통제의 질과 감사인 규모(Big4, Non-Big4)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두 변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내부통제의 질이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사인의 규모가 조절작용을 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은 내부통제의 질에 의해서 초래되는 보수주의의 약화를 억제하고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조절작용의 역할을 규모가 큰 감사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규모의 감사인이 기여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다.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IMF(외환위기) 이후 제도변화와 K-IFRS 도입 이후 회계보수주의 변화와 기업의 특성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및 감사인 지정, 감사 규모와 표준감사 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인과 보수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회계의 보수주의 대응치를 이용하여 조사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신외감법 개정 또는 제정 사항 중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등 개별 사항들과 회계보수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전반적으로 회계의 보수주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제도변화 목적인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여부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크다.

둘째, 회계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감사인 규모와 감사인의 노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측정한 것이다. 회계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제도 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인 규모와 감사인의 노력 수준 간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 차이가 있는 지를 측정해 본 첫 시도인 것이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9월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개혁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7년 회계제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까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2015년 8월 17일에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영업손실이 무려 3조 399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2011년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증가하는 원가를 회계기준에 맞게 제때에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 사건에 기인한 것이었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론이 확산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신뢰감법이 도입되었다.

신외감법의 도입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신외감법 하의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같은 제도들은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각 제도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강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 2018년과 2019년의 재무제표는 그 이전에 비해서 보수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행에 앞서 증가한 미래 의견불일치 또는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 및 제재 위험을 경감하고자 기존 감사인은 보다 보수적 회계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는 2018년부터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과 기업 간의 관계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며,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 또한, 김용식과 박상훈(2023)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이후에 회계의 보수주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의 철저한 검토를 유도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업 내부에서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채택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우재(2021)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의 회계보수성을 측정한 결과,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들의 회계보수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의 증가는 K-IFRS의 도입과 신외감법 도입이 점차 회계품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현상에 기인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비율은 97.2%로 신외감법 도입 이전 2017회계연도 98.5%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감사인 2021년도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5.2%)은 2021년도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비율(98.7%)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이는 신외감법이 감사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기업들이 보다 신중한 회계처리를 선택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회계정보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가 개정 또는 제정이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의 비율이 제도변화 이후에 크게 낮아지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 2018년과 2019년 기업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선행연구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이 매년 사전 예고하는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에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감리 제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위반이 전체 제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감독 방향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환경의 변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회계보수성 증가 경향을 종합해 볼 때, 신외감법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강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신외부감사법 도입은 보수적 회계처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박종일과 전규안(2022)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인 규모별로 나누어 감사품질 제고의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주로 Non-Big4 감사인에서 감사품질이 크게 개선이 된 것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Non-Big4 감사인과 달리 Big4 감사인은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율이 감소하더라도 감사품질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Big4 회계법인은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율이 감소하더라도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Non-Big4 감사인의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증가에 따라 이전 보다 더 증가된 경제적 동기가 감사품질의 제고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리 제재를 받은 이후에 회계법인은 내부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민호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감리 제재를 받은 Big4 감사인의 감사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의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Non-Big4 감사인은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낮고 감사자원이 부족한 Non-Big4 감사인이 감리제재 이후 내부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Non-Big4의 감사품질이 제고된 것을 선행연구가 보고하고 있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은 감사노력(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 감사보수 증가)을 더함으로써 경영자의 이익상향을 억제하며 제도 변경의 취지에 맞게 감사행위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배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감리 제재의 내용을 보면 전체 183건 중 Non-Big4 감사인의 제재 건수가 163건이고 비중은 89.1%로 Big4 감사인의 건수(20건)와 비중(10.9%) 보다 9배 정도 높게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감리 제재를

받은 회계처리 위반의 유형 중 보수주의와 관련된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8%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2017년 외부감사법의 개정 또는 제정 이후 감사인 규모(Big4, Non-Big4)간에 회계정보 품질개선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이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인한 보수적 회계처리 강화 현상은 감사인 규모 차이와 무관할 것이다.

신외감법 도입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의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감사인 노력을 요구하는 개선 내용으로 표준감사시간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및 품질관리기준 수준 의무 평가 및 개선 권고 실시,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그리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추가 등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신설이 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감사시간 미달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해당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유선 외(2021)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위해 2018년과 2019년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인의 총 감사투입시간과 핵심직급(품질관리검토자, 담당이사, 등록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신외감법 도입의 취지에 맞게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감사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아름 외(2022)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직후 2019년의 감사보수와 시간당 감사보수는 이례적으로 직전 2018년보다 28.0%와 5.8% 상승하였고 보고하였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인 감사인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감사보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감사보수의 증가가 재량적 발생액을 음(-)의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조사된 바, 이는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인의 감사행위를 이익의 하향조정에 집중시킴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감사인의 노력 수준에 따라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이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감사인 노력이 더 많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보수주의의 측정

본 연구는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회계의 보수주의 대응치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수주의를 측정함에 있어 조건적 보수주의(Conditional Conservatism)와 무조건적 보수주의(Unconditional Conservatism)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을 과소 평가하고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무조건적 보수주의라 하며, 이익보다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조건적 보수주의라 한다(황국재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Khan and Watts(2009)가 제시한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인 C-Score를 사용하여 외부감사법의 전면 개정과 제정에 따른 보수주의 변화를 조사한다. Khan and Watts(2009)의 모형은 좋은 소식(Good news)과 나쁜 소식(Bad news)의 인식시점이 다르다는 Basu(1997)의 조건적 보수주의 모형에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다.

보수주의는 기업이 회계처리를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내부감시자(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 감독기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질차가 강화되면서 기업 경영자의 회계처리 선택에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을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서 손실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 방식이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함에 따라 조건적 보수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수주의 회계처리 선택에 대한 요구는 각 기업별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보수주의 모형들 중에서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개별기업의 보수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 Khan and Watts(2009)의 모형을 본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Khan and Watts(2009)의 보수주의 모형

Khan and Watts(2009)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좋은 소식(Good news)과 나쁜 소식(Bad news)의 인식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식(1)과 같은 모형을 통해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를 측정하였다.

Khan and Watts(2009)는 개별기업의 고유특징인 투자기회(Investment Opportunity Set)인 기업 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성(MTB)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Basu(1997) 모형과 LaFond and Roychowdhury(2008) 모형(식1)에 반영하여 아래 식(2)를 이용하여 C-score를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EARN_t = & \beta_0 + \beta_1 RET_t + \beta_2 DRET_t + \beta_3 RET_t \times SIZE_t + \beta_4 RET_t \times LEV_t + \beta_5 RET_t \times MTB_t \\
& + \beta_6 DRET_t \times RET_t + \beta_7 DRET_t \times RET_t \times SIZE_t + \beta_8 DRET_t \times RET_t \times LEV_t \\
& + \beta_9 DRET_t \times RET_t \times MTB_t + \beta_{10} DRET_t \times SIZE_t + \beta_{11} DRET_t \times LEV_t \\
& + \beta_{12} DRET_t \times MTB_t + \beta_{13} SIZE_t + \beta_{14} LEV_t + \beta_{15} MTB_t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1)}$$

여기서,

$EARN$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RET = t 기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주식수익률
 $DRET$ = RET 이 0보다 낮으면 1, 아니면 0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MTB = 시가총액/장부가액

위 식에서 $\beta_1, \beta_3, \beta_4, \beta_5$ 의 합계가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 즉, G-Score이며, $\beta_6, \beta_7, \beta_8, \beta_9$ 의 합계가 호재에 비해 악재가 주가에 적시에 반영되는 정도(Conservatism Score, C-Score)이다. 이 식을 연도별 횡단면 회귀 분석하여 회귀계수를 추출하면 개별 기업의 G-Score와 C-Score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식(2)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한 C-score 계수 값을 이용하여 Khan and Watts(2009)는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인 C-score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적 성향은 강해짐을 실증하였다.⁴⁾

본 연구는 표본을 대상으로 C-Score를 산출하였고, Ahmed and Duellman(2013)을 참조하여 C-Score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 포함하는 통제변수로 시가총액 대비 장부가액 비율(MTB), 부채비율(LEV), 기업규모($SIZE$), 매출성장률(GRW), 연구개발비 비중($RNDAD$), 과거 매출의 변동성($STDREV$)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모형은 식(2)와 같다.

$$C-Score_t = \beta_0 + \beta_1 MTB_t + \beta_2 LEV_t + \beta_3 SIZE_t + \beta_4 GRW_t + \beta_5 RNDAD_t + \beta_6 STDREV_t + \varepsilon_t \quad \text{식(2)}$$

여기서,

$C-Score$ = Khan and Watts(2009)의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
 MTB = 시가총액/장부가액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매출액성장률
 $RNDAD$ = t 기 연구개발비를 t 기 매출로 나눈 값
 $STDREV$ = $t-5$ 기부터 $t-1$ 기까지 매출액의 표준편차

4) 보다 구체적인 C-Score 측정 방법과 이에 대한 논의는 Khan and Watts(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 1은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3)을 설정하였다.

$$C-Score_t = \beta_0 + \beta_1 AFTER_t + \beta_2 MTB_t + \beta_3 LEV_t + \beta_4 SIZE_t + \beta_5 GRW_t + \beta_6 RNDAD_t + \beta_7 STDREV_t + \beta_8 FIRST_t + \beta_9 TENURE_t + \sum IND + \varepsilon_t \quad \text{식(3)}$$

여기서,

$C-Score$ = Khan and Watts(2009)의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

$AFTER$ =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MTB = 시가총액/장부가액(총자본)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매출액성장률

$RNDAD$ = t 기 연구개발비를 t 기 매출로 나눈 값

$STDREV$ = $t-5$ 기부터 $t-1$ 기까지 매출액의 표준편차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TENURE$ = 연속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sum IND$ = 산업더미

가설 1의 관심변수는 β_1 이다. $AFTER$ 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2018~2021년)면 1, 도입 이전(2014~2017년)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1에 따라 신외감법 도입 이전에 비해 이후에 보수성이 증가한다면 식(3)의 β_1 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가설 2는 감사인 규모와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4)를 설정하였다.

$$C-Score_t = \beta_0 + \beta_1 AFTER_t + \beta_2 nonBIG4_t + \beta_3 nonBIG4_t * AFTER_t + \beta_4 MTB_t + \beta_5 LEV_t + \beta_6 SIZE_t + \beta_7 GRW_t + \beta_8 RNDAD_t + \beta_9 STDREV_t + \beta_{10} FIRST_t + \beta_{11} TENURE_t + \sum IND + \varepsilon_t \quad \text{식(4)}$$

여기서,

$nonBIG4$ = 감사인이 nonBig4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식(3) 참조

가설 2의 관심변수는 식(4)의 β_3 이다. 가설 2에 따라 감사인 규모에 따라 보수성에 차이가 있어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 회계처리 현상이 nonBig4에서 더 강하면 식(4)의 β_3 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가설 3은 감사인 노력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5)를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C-Score_t = & \beta_0 + \beta_1 AFTER_t + \beta_2 AUDIT_t + \beta_3 AUDIT_t * AFTER_t + \beta_4 MTB_t + \beta_5 LEV_t \\
 & + \beta_6 SIZE_t + \beta_7 GRW_t + \beta_8 RNDAD_t + \beta_9 STDREV_t + \beta_{10} FIRST_t \\
 & + \beta_{11} TENURE_t + \sum IND + \varepsilon_t
 \end{aligned}
 \tag{5}$$

여기서,

$AUDIT$ = 감사인의 노력

$AUDIT_F$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UDIT_H$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식(3) 참조

가설 3의 관심변수는 식(5)의 β_3 이다. 가설 3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에 따라 보수성에 차이가 있어 신뢰감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 회계처리 현상이 감사인 노력이 큰 집단에서 더 강하면 식(5)의 β_3 은 유의한 양(+)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거래소 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한다. 재무자료는 DataGuide와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표본은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표본은 13,121 기업-연도이다.

〈표 1〉 최종 표본의 수

표본선정 기준		기업-연도
2014~2021년 기간 KOSPI 및 KOSDAQ 상장사		16,903
제외	금융업에 속하는 관측치	(832)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관측치	(318)
	총자본이 결측치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 관측치	(151)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관측치	(2,481)
최종표본		13,121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2>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상·하위 1% 극단치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인 *C-Score*의 평균값은 0.1314로 이견 외(2015)에서 측정한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평균=0.129, 중위수=0.111)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TD	MIN	P25	P50	P75	MAX
<i>C-Score</i>	0.1314	0.0719	0.0029	0.0858	0.1222	0.1774	0.3040
<i>AFTER</i>	0.5505	0.4975	0	0	1	1	1
<i>nonBIG4</i>	0.5695	0.4952	0	0	1	1	1
<i>AUDIT_F</i>	11.5569	0.7825	9.9035	11.0021	11.4076	11.9829	14.1303
<i>AUDIT_H</i>	7.1751	0.7156	5.7038	6.7069	7.0344	7.4861	9.6410
<i>AFUP</i>	0.5036	0.5000	0	0	1	1	1
<i>AHUP</i>	0.5004	0.5000	0	0	1	1	1
<i>AF50</i>	0.5376	0.4986	0	0	1	1	1
<i>AH50</i>	0.4998	0.5000	0	0	0	1	1
<i>MTB</i>	1.8419	2.0254	0.1996	0.6934	1.1843	2.1413	13.0682
<i>LEV</i>	0.4224	0.2040	0.0550	0.2546	0.4213	0.5772	0.8967
<i>SIZE</i>	19.3040	1.4698	16.7233	18.2892	19.0213	20.0673	24.1949
<i>GRW</i>	0.0851	0.3583	-1	-0.0688	0.0378	0.1614	2.1485
<i>RNDAD</i>	0.0267	0.0670	0	0	0.0036	0.0239	0.5493
<i>FIRST</i>	0.2286	0.4200	0	0	0	0	1
<i>TENURE</i>	4.6784	3.6309	1	2	3	7	16
N	13,121						

1) 변수의 정의 : *C-Score*=Khan and Watts(2009)의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 ; *AFTER*=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 *nonBIG4*=감사인인 nonBig4이면 1, 아니면 0 ; *AUDIT_F*=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AUDIT_H*=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AFUP*=감사보수가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 *AHUP*=감사시간이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 *AF50*=감사보수가 P25~P75이면 1, 아니면 0 ; *AH50*=감사시간이 P25~P75이면 1, 아니면 0 ; *MTB*=시가총액/장부가액 ; *LEV*=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SIZE*=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GRW*=매출액성장률 ; *RNDAD*=*t*기 연구개발비를 기말매출로 나눈 값 ; *FIRST*=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 *TENURE*=연속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2. 상관관계분석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C-Score*)와 *AFTER*의 관계는 0.680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C-Score*)와 회계법인 유형(*nonBIG4*)의 관계는 0.124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C-Score*)와 *AUDIT_F*의 관계는 0.269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 측정치(*C-Score*)와 *AUDIT_H*의 관계는 0.188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단순 상관관계분석이므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Variable	C-Score	AFTER	nonBIG4	AUDIT_F	AUDIT_H	AHUP	AF50	AH50	MTB	LEV	SIZE	GRW	RNDAD	STDPREV	FIRST	TENURE
C-Score	1	0.681 ***	0.125 ***	0.270 ***	0.188 ***	0.284 ***	-0.008 ***	0.121 ***	0.070 ***	0.018 **	0.015 *	-0.014 ***	0.077 ***	-0.015 *	0.204 ***	-0.151 ***
AFTER		1	0.120 ***	0.282 ***	0.208 ***	0.298 ***	0.004 ***	0.122 ***	0.037 ***	-0.015 *	0.042 ***	0.025 ***	0.062 ***	-0.018 **	0.130 ***	-0.119 ***
nonBIG4			1	-0.418 ***	-0.505 ***	-0.330 ***	0.052 ***	0.103 ***	0.080 ***	-0.095 ***	-0.423 ***	0.032 ***	0.044 ***	-0.149 ***	0.154 ***	-0.225 ***
AUDIT_F				1	0.897 ***	0.755 ***	-0.188 ***	-0.183 ***	-0.060 ***	0.307 ***	0.729 ***	-0.018 ***	-0.097 ***	0.319 ***	0.083 ***	-0.013 ***
AUDIT_H					1	0.640 ***	-0.228 ***	-0.173 ***	-0.127 ***	0.304 ***	0.809 ***	-0.029 ***	-0.116 ***	0.347 ***	0.024 ***	0.042 ***
AFUP						1	0.674 ***	-0.015 **	-0.041 ***	0.257 ***	0.493 ***	-0.010 ***	-0.085 ***	0.133 ***	0.130 ***	-0.059 ***
AHUP							1	-0.063 ***	-0.108 ***	0.260 ***	0.561 ***	-0.025 ***	-0.112 ***	0.140 ***	0.075 ***	-0.014 *
AF50								1	0.483 ***	-0.028 ***	-0.200 ***	0.012 ***	0.011 ***	-0.128 ***	-0.022 ***	0.034 ***
AH50									1	0.020 **	-0.214 ***	0.003 ***	0.028 ***	-0.124 ***	0.069 ***	-0.048 ***
MTB										1	0.038 ***	0.120 ***	0.388 ***	-0.059 ***	0.066 ***	-0.117 ***
LEV											1	0.272 ***	-0.129 ***	0.083 ***	0.053 ***	-0.041 ***
SIZE												1	-0.002 ***	0.374 ***	-0.099 ***	0.137 ***
GRW													1	-0.017 ***	-0.001 ***	-0.031 ***
RNDAD														*	-0.015 ***	-0.047 ***
STDPREV														1	-0.035 ***	0.058 ***
FIRST															1	-0.552 ***
TENURE																1

1)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실증분석결과

<표 4>는 가설 1에 따라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설 1에 따라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하였다면 *AFTER*는 유의한 양(+)의 값을 예상한다.

분석결과, *AFTER*의 계수값은 0.0959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103.64$). 이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들이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채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⁵⁾.

<표 4>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 강화 분석

$C\text{-Score}_i = \beta_0 + \beta_1 AFTER_i + \beta_2 MTB_i + \beta_3 LEV_i + \beta_4 SIZE_i + \beta_5 GRW_i + \beta_6 RNDAD_i + \beta_7 STDREV_i + \beta_8 FIRST_i + \beta_9 TENURE_i + \sum IND + \varepsilon_i$		
Variable	예상부호	Model(1)
<i>Intercept</i>	+/-	0.0566 (7.03) ***
<i>AFTER</i>	+	0.0959 (103.64) ***
<i>MTB</i>	+	0.0011 (4.28) ***
<i>LEV</i>	+	0.0082 (3.47) ***
<i>SIZE</i>	+/-	0.0004 (1.14)
<i>GRW</i>	+/-	-0.0069 (-5.44) ***
<i>RNDAD</i>	+	0.0331 (4.41) ***
<i>STDREV</i>	+	0.0000 (-0.16)
<i>FIRST</i>	+	0.0192 (14.73) ***
<i>TENURE</i>	-	-0.0001 (-0.98)
<i>IND</i>	+/-	included
F Value		935.45***
Adj R-sq		0.4808
N		13,121

1)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변수를 추가한 모형 $C\text{-Score}_i = \beta_0 + \beta_1 AFTER_i + \beta_2 MTB_i + \beta_3 LEV_i + \beta_4 SIZE_i + \beta_5 GRW_i + \beta_6 RNDAD_i + \beta_7 STDREV_i + \beta_8 FIRST_i + \beta_9 TENURE_i + \beta_{10} lagC\text{-SCORE}_{i-1} + \sum IND + \varepsilon_i$ 이다. 민감도 분석으로 β_{10} 에 전기 $C\text{-Score}_{i-1}$ 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표 4>를 재검증 한 결과 *AFTER*의 계수값은 0.0190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text{-stat}=25.63$). 이는 기존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표 5>는 가설 2에 따라 감사인 규모와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1)은 감사인이 Big4인 표본을 대상으로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Big4인 표본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하였다면 *AFTER*는 유의한 양(+)의 값을 예상한다.

Model(2)는 감사인이 nonBig4인 표본을 대상으로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nonBig4인 표본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하였다면 *AFTER*는 유의한 양(+)의 값을 예상한다.

Model(3)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인 규모별로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 차이가 있고 신외감법 도입 후 보수주의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nonBig4가 더 크다면 *nonBIG4**AFTER**의 계수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Model(1)에서 *AFTER*의 계수값은 0.0928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67.37$). 이는 감사인이 Big4인 표본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Model(2)에서 *AFTER*의 계수값은 0.096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75.81$). 이는 감사인이 nonBig4인 표본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Model(3)에서 *nonBIG4*AFTER*의 계수값은 0.0048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2.59$). 이는 감사인이 Big4인 표본에 비해 nonBig4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값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신외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회계 보수주의 강화 현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⁶⁾. 전기 C-score값을 통제변수에 포함한 연구모형의 수정 결정계수는 0.8174로 <표 5>의 실증분석에 있는 수정결정계수의 값 보다 매우 높다. 이는 전기 C-score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연도별 C-score를 통제한 실증분석까지 포함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예상대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강화되었으나 감사인 규모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 결과는 non-Big4와 Big4 감사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회계 보수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가설 2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전기 $C\text{-Score}_{i-t}$ 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표 5>를 재검증한 결과, <표 5>의 Model(1)을 재검증한 결과 *AFTER*의 계수값은 0.018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text{-stat}=17.50$). Model(2)를 재검증한 결과 *AFTER*의 계수값은 0.0190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text{-stat}=18.40$). Model(3)을 재검증한 결과 *AFTER*nonBIG4*의 계수값은 0.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기존 분석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통제변수에 전기 C-Score를 추가하였을 때는 감사인 유형별로 신외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회계보수주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외부감사법 도입의 보수주의 강화 효과에 대한 감사인 규모별 차이 분석

$$C-Score_i = \beta_0 + \beta_1 AFTER_i + \beta_2 nonBIG4_i + \beta_3 nonBIG4_i * AFTER_i + \beta_4 MTB_i + \beta_5 LEV_i + \beta_6 SIZE_i + \beta_7 GRW_i + \beta_8 RNDAD_i + \beta_9 STDREV_i + \beta_{10} FIRST_i + \beta_{11} TENURE_i + \sum IND + \varepsilon_i$$

Variable	예상 부호	Model(1) Big4	Model(2) nonBig4	Model(3) Total
<i>Intercept</i>	+/-	0.0432 (3.92)***	0.0392 (2.62)***	0.0397 (4.53)***
<i>AFTER</i>	+	0.0928 (67.37)***	0.0966 (75.81)***	0.0926 (66.72)***
<i>nonBIG4</i>	+			0.0029 (2.01)**
<i>nonBIG4*AFTER</i>	+			0.0048 (2.59)***
<i>MTB</i>	+	0.0011 (2.78)**	0.0012 (3.57)**	0.0012 (4.51)***
<i>LEV</i>	+	0.0074 (2.06)**	0.0087 (2.75)**	0.0081 (3.42)***
<i>SIZE</i>	+/-	0.0011 (2.28)**	0.0013 (1.75)*	0.0012 (3.06)***
<i>GRW</i>	+/-	-0.0094 (-4.22)***	-0.0059 (-3.80)***	-0.0072 (-5.65)***
<i>RNDAD</i>	+	0.0432 (3.33)**	0.0301 (3.27)***	0.0339 (4.53)***
<i>STDREV</i>	+	0.0000 (-0.35)	0.0000 (0.21)	0.0000 (-0.30)
<i>FIRST</i>	+	0.0107 (4.84)***	0.0224 (13.62)***	0.0189 (14.56)***
<i>TENURE</i>	-	0.0000 (0.04)	-0.0002 (-1.00)	0.0000 (-0.16)
<i>IND</i>	+/-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370.55***	542.75***	841.85***
Adj R-sq		0.4597	0.4852	0.4820
N		5,648	7,473	13,121

1)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은 가설 3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1)은 가설 3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에 따라 회계보수성의 차이를 보인다면 $AUDIT_F*AFTER$ 는 유의한 값을 나타낼 것이다.

Model(1)에서 $AUDIT_F*AFTER$ 의 계수값은 0.0091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7.34$). 이는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수준이 높을수록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Model(2)는 가설 3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감사시간)에 따라 회계보수성의 차이를 보인다면 $AUDIT_H*AFTER$ 는 유의한 값을 나타낼 것이다.

Model(2)에서 $AUDIT_H*AFTER$ 의 계수값은 0.0068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5.20$). 이는 감사인의 노력(감사시간)수준이 높을수록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표 6> 신외부감사법 도입의 보수주의 강화 효과에 대한 감사인 노력별 차이 분석

$C-Score_i = \beta_0 + \beta_1 AFTER_i + \beta_2 AUDIT_i + \beta_3 AUDIT_i * AFTER_i + \beta_4 MTB_i + \beta_5 LEV_i + \beta_6 SIZE_i$ $+ \beta_7 GRW_i + \beta_8 RNDAD_i + \beta_9 STDREV_i + \beta_{10} FIRST_i + \beta_{11} TENURE_i + \sum IND + \varepsilon_i$			
Variable	예상부호	Model(1) $AUDIT_F$	Model(2) $AUDIT_H$
<i>Intercept</i>	+/-	0.0558 (4.56) ^{***}	0.0920 (9.68) ^{***}
<i>AFTER</i>	+	-0.0143 (-1.01)	0.0442 (4.75) ^{***}
<i>AUDIT_F</i>	+	0.0107 (8.37) ^{***}	
<i>AUDIT_F*AFTER</i>	+	0.0091 (7.34) ^{***}	
<i>AUDIT_H</i>	+		0.0107 (7.67) ^{***}

7) 가설 3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_{i-1}$ 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표 6>의 Model(1)을 재검증 한 결과 $AUDIT_F*AFTER$ 의 계수값은 0.0027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stat=3.70$). 이는 기존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8) 가설 3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_{i-1}$ 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표 6>의 Model(2)를 재검증 한 결과 $AUDIT_H*AFTER$ 의 계수값은 0.002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stat=3.29$). 이는 기존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표 6〉 신외부감사법 도입의 보수주의 강화 효과에 대한 감사인 노력별 차이 분석 (계속)

Variable	예상부호	Model(1) <i>AUDIT_F</i>	Model(2) <i>AUDIT_H</i>
<i>AUDIT_H*AFTER</i>	+		0.0068 (5.20) ^{***}
<i>MTB</i>	+	0.0003 (1.30)	0.0007 (2.63) ^{***}
<i>LEV</i>	+	0.0025 (1.04)	0.0043 (1.81) [*]
<i>SIZE</i>	+/-	-0.0057 (-11.01) ^{***}	-0.0052 (-8.93) ^{***}
<i>GRW</i>	+/-	-0.0057 (-4.49) ^{***}	-0.0057 (-4.50) ^{***}
<i>RNDAD</i>	+	0.0357 (4.84) ^{***}	0.0333 (4.48) ^{***}
<i>STDREV</i>	+	0.0000 (-1.25)	0.0000 (-1.06)
<i>FIRST</i>	+	0.0160 (12.30) ^{***}	0.0175 (13.41) ^{***}
<i>TENURE</i>	-	-0.0001 (-0.61)	-0.0002 (-1.08)
<i>IND</i>	+/-	included	included
F Value		858.48 ^{***}	834.31 ^{***}
Adj R-sq		0.4950	0.4879
N		13,121	13,121

1)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추가분석결과

가. Basu(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 모형을 활용한 보수주의 검증

추가분석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Basu(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보수주의 모형으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모형은 Basu(1997)의 모형에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SIZE*, *MTB*, *LEV*)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Basu(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에 기초하여 신외감법 도입, 감사인의 규모 및 감사인의 노력과 상호작용 변수를 취한 아래와 같은 모형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회계 보수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ARN_t = \beta_0 + \beta_1 RET_t + \beta_2 DRET_t + \beta_3 DRET_t * RET_t + \beta_4 AFTER + \beta_5 AFTER * DRET * RET_t + \beta_6 SIZE_t + \beta_7 LEV_t + \beta_8 MTB_t + \varepsilon_t \quad \text{식(6)}$$

여기서,

EARN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RET = 주식수익률
DRET = *RET*이 0보다 낮으면 1, 아니면 0
AFTER =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MTB = 시가총액/기말 자본의 장부가액

식(6)의 β_5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면 보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은 가설 1에 따라 신외감법 도입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Model(1), Model(2)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Model(1)은 Busu(1997)의 모형으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이며, Model(2)는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모형으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이다. 가설 1에 따라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증가하였다면 *AFTER*DRET*RET*은 유의한 양(+)의 값을 예상한다.

먼저, Model(1)에서 *AFTER*DRET*RET*의 계수값은 0.0517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3.25). 이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Model(2)에서 *AFTER*DRET*RET*의 계수값은 0.0459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Model(1)에서 Busu(1997)의 모형으로 측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Busu(1997)의 모형으로 가설 2와 가설 3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인 규모와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Big4 표본에서 *AFTER*DRET*RET*의 계수값은 0.0439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2.10). 또한, nonBig4 표본에서 *AFTER*DRET*RET*의 계수값은 0.0445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1.93).

다음으로,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사

보수가 중위수 이상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82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3.50$). 또한, 감사보수 중위수 미만인 표본에서는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0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감사인의 노력을 감사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이 중위수 이상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70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3.36$). 또한, 감사시간이 중위수 미만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49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2.05$).

LaFond and Roychowdhury(2008) 모형으로 가설 2와 가설 3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인 규모와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Big4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53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2.86$). 또한, nonBig4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472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2.32$).

다음으로,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중위수 이상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471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2.20$). 감사보수 중위수 미만인 표본에서는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01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감사인의 노력을 감사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이 중위수 이상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09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1.96$). 또한, 감사시간이 중위수 미만인 표본에서 $AFTER*DRET*RET$ 의 계수값은 0.0354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다($t\text{-stat}=1.66$).

이러한 결과는 조건적 보수주의의 다른 측정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주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다른 측정치를 이용한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 강화 분석

Variable	예상 부호	Model(1)	Model(2)
<i>Intercept</i>	+/-	0.0332 (13.27)***	-0.1162 (-5.45)***
<i>RET</i>	+/-	-0.0151 (-5.42)***	-0.3098 (-12.54)***
<i>DRET</i>	+/-	-0.0051 (-1.22)	0.0327 (0.94)
<i>RET*DRET</i>	+	0.1296 (11.06)***	1.3054 (13.42)***
<i>AFTER</i>		-0.0073 (-2.16)**	-0.0032 (-1.08)
<i>AFTER*RET</i>		0.0036 (0.95)	-0.0107 (-3.20)***

<표 7> 다른 측정치를 이용한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 강화 분석 (계속)

Variable	예상 부호	Model(1)	Model(2)
<i>AFTER*DRET</i>		0.0071 (1.25)	-0.0028 (-0.56)
<i>AFTER*RET*DRET</i>	+	0.0517 (3.25) ^{***}	0.0459 (3.25) ^{***}
<i>SIZE</i>	+/-		0.0113 (10.05) ^{**}
<i>SIZE*RET</i>			0.0185 (13.90) ^{***}
<i>SIZE*DRET</i>			-0.0025 (-1.36)
<i>SIZE*RET*DRET</i>			-0.0724 (-14.3) ^{***}
<i>LEV</i>	+		-0.1446 (-18.69) ^{***}
<i>LEV*RET</i>			-0.0708 (-8.64) ^{***}
<i>LEV*DRET</i>			0.0235 (1.84) [*]
<i>LEV*RET*DRET</i>			0.2996 (9.09) ^{***}
<i>MTB</i>	+		-10.2476 (-13.16) ^{***}
<i>MTB*RET</i>			1.5486 (3.01) ^{***}
<i>MTB*DRET</i>			-0.1352 (-0.09)
<i>MTB*RET*DRET</i>			5.7864 (1.52)
F Value		94.55 ^{***}	239.35 ^{***}
Adj R-sq		0.0475	0.2566
N		13,121	13,121

- 1) 변수의 정의 : *RET*=주식수익률 ; *DRET*=*RET*이 0보다 낮으면 1, 아니면 0 ; *AFTER*=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 *SIZE*=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V*=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MTB*=시가총액/장부가액.
-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기업 규모별 신외감법 도입 효과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준감사시간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외감법의 적용 효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기업 규모 그룹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보수주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 1천억 원 미만 그룹에서 *AFTER*의 계수값은 0.0947로 1% 수준으로 유의하였으며($t\text{-stat}=52.95$),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그룹에서는 *AFTER*의 계수값은 0.0956으로 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t\text{-stat}=69.22$). 또한,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 그룹에서 *AFTER*의 계수값은 0.0984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t\text{-stat}=44.67$),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그룹에서도 *AFTER*의 계수값은 0.099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text{-stat}=33.14$).

이러한 결과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회계보수주의가 기업 규모에 따라 보수주의의 변화 정도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다. 연도별 회계보수주의의 효과

마지막 추가분석에서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연도별로 회계보수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신외감법 이외에도 2018년 수익인식기준 도입, 2019년 리스 회계기준 도입 등 다양한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변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외감법 도입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연도별로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이 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신외감법 도입 이후 연도별 보수주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신외감법 시행 발표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는지,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외감법 시행 이전인 2017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이후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로 회계보수주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표 8>에서는 연도별 회계보수주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Model(1)에서 2017년과 2018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에 회계보수주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제외한 Model(2)~Model(4)에서는 2017년 대비 2019년(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회계보수주

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에는 신외감법 시행 초기 단계로 인해 회계보수주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신외감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보수주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연도별 회계보수주의의 효과

Variable	예상 부호	Model(1) 2017 vs 2018	Model(2) 2017 vs 2019	Model(3) 2017 vs 2020	Model(4) 2017 vs 2021
<i>Intercept</i>	+/-	0.1598 (27.16)***	0.1511 (19.16)***	0.1611 (23.21)***	0.1666 (20.51)***
<i>AFTER</i>	+	-0.0271 (-40.15)***	0.0719 (80.49)***	0.1194 (147.84)***	0.0482 (52.02)***
<i>MTB</i>	+	-0.0005 (-2.55)**	-0.0006 (-2.32)**	-0.0002 (-1.05)	-0.0002 (-0.67)
<i>LEV</i>	+	0.0145 (8.22)***	0.0204 (8.83)***	0.0186 (9.21)***	0.0137 (5.79)***
<i>SIZE</i>	+/-	-0.0025 (-9.55)***	-0.0021 (-5.81)***	-0.0026 (-8.24)***	-0.0029 (-7.89)***
<i>GRW</i>	+/-	-0.0011 (-1.06)	-0.0030 (-2.34)**	-0.0020 (-1.91)*	-0.0028 (-2.40)**
<i>RNDAD</i>	+	0.0002 (0.04)	0.0248 (3.40)***	-0.0055 (-0.88)	0.0350 (5.31)***
<i>STDREV</i>	+	0.0000 (0.59)	0.0000 (-0.21)	0.0000 (1.49)	0.0000 (0.67)
<i>FIRST</i>	+	-0.0004 (-0.40)	-0.0012 (-0.91)	0.0012 (1.17)	-0.0007 (-0.58)
<i>TENURE</i>	-	-0.0002 (-1.82)*	-0.0004 (-2.57)**	-0.0002 (-1.55)	-0.0003 (-2.13)**
<i>IND</i>	+/-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137.73***	519.37***	1852.87***	238.48***
Adj R-sq		0.3522	0.6678	0.8746	0.4658
N		3,270	3,353	3,454	3,542

1)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 5%, 10%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신외감법 개혁제도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도 변화의 취지에 맞게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다. 신외감법 도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 사건 발생 이후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러 제도들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된 기업-연도 13,121개 표본을 활용하여 보수주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회계투명성은 기업 이익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대용치 중에서 보수주의의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회계보수주의는 오랫동안 실무 및 학계에서 논의된 회계정보의 대표적인 질적 특성 중 하나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계약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채권자 및 주주와 경영자의 정보비대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간과 이전 기간 보수주의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외감법 도입이 기업의 회계보수성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및 감사계약 기간 단축을 통한 감사인 독립성의 강화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통한 감사인의 노력 증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회계보수성 변화에 대한 감사인의 영향을 감사인 규모(Big4와 nonBig4)와 감사인 노력(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 고유의 보수주의를 측정하는 Khan and Watts(2009)의 C-Score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Basu(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모형을 활용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인 강제 교체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시간 증가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 검증 결과, 기본 모형에서는 감사인이 Big4인 표본에 비해 nonBig4에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 강화현상이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기본 연구모형에 전기 C-score값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신외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회계 보수주의 강화 현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도별 C-score를 통제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 가설 2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는 예상대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강화되었으나 감사인 규모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 현상에 있어 감사인 규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감사인 규모에 상관없이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 모두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

한 결과로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감사인의 노력(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보수주의 간 관련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예상대로 감사보수가 높거나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고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감사인의 노력에 따라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있어 감사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 측정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분석 결과, Basu(1997)와 LaFond and RoyChowdhury(2008)의 모형을 활용한 추가분석의 결과는 기본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기업 규모별 분석에서는 모든 기업 규모에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고, 연도별 분석을 통해서는 2018년 이후 보수주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변화의 측정함으로써 제도변경의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총 64개국 중 37위로 지난 2년 전과 비교하여 무려 24단계 상승한 것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개별 제도별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신외감법에는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같은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신외감법이 전반적인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미친 총체적 영향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제도변화의 정책적 효과를 감사인 측면에서의 감사품질의 변화가 아닌 기업 경영자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수준의 변화로 조사한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다. 신외감법의 도입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인 노력을 더 요구하는 것인 바, 감사인의 행동변화는 기업의 회계처리 선택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된 각 개별 사항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신외감법이 도입 이후 전반적인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규모가 작은 nonBig4와 Big4가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도변화 이전부터 이미 감사품질 수준이 좋은 Big4는 지속적으로 그 품질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고 제도변화 이후에 nonBig4가 감사품질 수준을 더 개선함에 따라 기업의 전체적인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감사인의 노력이 많을수록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감사인이 독립성을 견지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의해 측정된 보수주의 측정치는

모두 계량통계학적 모형의 추정을 통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형의 불완전성에 따른 측정 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수적 회계처리에는 거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표현의 충실성에 배치되는 표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기업을 제거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제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회계부정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주의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수근 · 황이석 · 심호식 · 이우중. 2004. “회계투명성 평가에 대한 연구 - 한국회계학회의 투명 회계대상을 중심으로-”. 경영논집 제38권 제1호.
- 권수영 · 김문철 · 손성규 · 한봉희. 2017.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신영사 2편 서적 : 421-434.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0.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20.1.21.).
- 금융감독원. 2022.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보도자료. (2022. 6.24.).
- 김민호 · 유용근 · 이상혁. 2021. “감사인에 대한 감리 제제가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3권 제2호 : 57-92.
- 김석현 · 하순금 · 조용언. 2013. “내부통제의 질, 감사인 규모, 보수주의의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 297-328.
- 김연화 · 손혁. 2017. “상장폐지기업의 감사인 교체와 보수주의”. 한국회계학회 제26권 제5호 : 69-105.
- 김용식 · 박상훈. 2023.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감사시간의 증가가 회계의 보수주의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5권 제1호 : 293-321.
- 김정옥 · 배길수. 2006.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69-96.
- 김진배. 2002.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측정”. 회계와감사연구 40.
- 김진섭. 201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 관련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 김진수 · 김임현 · 나철호. 2017. “회계감사인이 판단한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이익의 질적 특성 -비상장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권 제1호.
- 김현정 · 유승원.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재무제표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3호 : 65-94.
- 박종일 · 전규안. 2022.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3호 : 197-228.
- 박종찬. 2005.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의 변화”.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1-26.
- 손혁 · 정재경. 2020.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와의 관계”. 산업연구 제44권 제1호.
- 이건 · 한승수 · 김응길. 2015. “경영자의 능력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40권 제3호 : 257-297.
- 이경태. 최종원. 2006. “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이우재. 202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회계제도의 변화와 회계보수주의”.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 이유선 · 노기팔 · 박경호. 2021.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2호 : 307–324.
- 이효익 · 최관 · 백원선. 2009. “IFRS 회계원리”. 신영사.
- 정아름 · 정도진 · 김세훈. 2022.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인의 감사행위에 미치는 영향—교섭력과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을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3호 : 357–386.
- 차상권 · 김응길. 2021.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조건적 보수주의”. 국제회계연구 제98집 제6호.
- 최관 · 전성일. 2005. “외환위기와 보수적 회계처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 215–242.
- 하순금 · 조용언 · 박성환. 2015. “감사인 지정여부와 보수주의의 관련성”. 회계저널 제24권 제2호 : 117–151.
- 황국재 · 차명기 · 여영준.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회계보고에 영향을 주는지? : 자기과신경향과 보수주의회계보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 1663–1668.
- Ahmed, A. S., and S. Duellman. 2013.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1) : 1–30.
- Antle, R., and B. Nalebuff. 1991. “Conservatism and Auditor–Client Negoti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 31–54.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December) : 3–37.
- DeFond, M. L., & Zhang, J. 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 275–326.
- Francis, J., & Yu, M. 2010. Auditor tenur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85(1) : 315–343.
- Francis, J. R., & Wang, D. 2008. “The Joint Effect of Investor Protection and Big 4 Audits on Earnings Quality Around the Worl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1) : 157–191.
- Givoly, D. and C. Hayn. 2000. The Changing Time-series Properties of Earnings, Cash Flows and Accruals :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3) : 287–320.
- Khan, M., and R. L. Watts. 2009. Estimation and empirical properties of a firm-year measure of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 : 132–150.
- LaFond, R., and S. Roychowdhury. 2008. Managerial ownership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1) : 101–135.

- Lobo, G. J., and J. Zhou. 2006. Did conservatism in financial reporting increase after the Sarbanes–Oxley Act? Initial evidence. *Accounting Horizons* 20(1) : 57–73.
- Watts, R. L. 2003a.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 207–221.
- Watts, R. L. 2003b.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I : Evidence and Research Opportunities. *Accounting Horizons* 17(4) : 287–301.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xternal Audit Regulations on Accounting Conservatism

Soo Yeol Choi* · Min-hee Kim** · Hee Chun Roh***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aim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order to verify the policy effect of the system change after implementation in 2018,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ccounting conservatism as a proxy, which measures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us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utilized 13,121 company-year samples from 2014 to 2021, which were listed on the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accounting was strengthen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This is largely due to the auditor's independence being further strengthen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designation system and the standard audit hour system, and the auditor's efforts being greater. Seco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conservative accounting was strengthened in all Big 4 and non-Big 4 auditor groups compared to before. The fac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sizes of auditors in this strengthening phenomenon is understandable as a result of efforts made by non-Big 4 audit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Lastly, the more audit fees and audit hour, which are audit resources, were invested, the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was strengthen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measuring the policy effect of introducing the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The research area was expanded by measur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ange not as a change in audit quality, but as a change in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that suppresses the manager's upward adjustment of profits.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maintain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t w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continuous institutional support for auditors to maintain independence and secure sufficient audit time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 accounting conservatism measured by the research model are not perfect and are all based on estimation of statistical models, which can cause measurement errors. Conservative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sooychoi@samdoacc.com, First Author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minhee_@naver.com,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rhc0401@ssu.ac.kr, Corresponding Author

accounting treatment includes excessively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that does not properly reflect transaction facts, so there is a limit that may include samples that contradict faithfulness of expression, one of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Key words〉 New External Audit Regulations, Accounting Conservatism,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Reliability, Audit Effort